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11. 21.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44호로 2024년 11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출연금을 편성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출연대상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목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400,000천원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기본재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4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2.5배에 해당하는 50억을 한도로 신용보증을 지원할 예정임.

○ 검토결과,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신용보증재단¹⁾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

1)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음.

된 재단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4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이며, 출연금의 신용보증 한도와 관련하여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세계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긴축적 통화정책, 고금리 장기화로 기인하여 저성장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고금리로 인한 채무부담 증가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따라서,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제9조(설립)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시·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용자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시설의 설치비 등 지원(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등)
4.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지원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11. 21.

행정위원회
전문위원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45호로 2024년 11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출연대상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업내용	- 지방세제 개편과 지방재정 발전 방안, 지역 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 - 지방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간행물 발간, 포럼 운영 - 지방 세무공무원 교육, 자치단체 소통 협력 등 지원 사업
산출기초	2023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210,578,325천원의 1만분의 1.2
출연금	25,270천원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5. 검토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회계연도 영등포구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¹⁾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²⁾ 및 동 법시행령³⁾에 근거하여 전전년도 보통지방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

1)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3)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의 1.2를 적용하여 지방세 발전 기금을 강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사업비의 출연은 의무사항임.

○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적 특이사항은 없음.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수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 2.~ 5.(생략)